2023년 11월 2주차 Vol.109

글로벌 식품 비관세장벽 뉴스레터

WEEKLY NEWSLETTER

글로벌 주간 뉴스브리핑

대만, 건강식품 신청 허가 규정 변경 고시

TBT

이슈 바로가기

- 2023년 10월 20일, 대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식품 등록 절차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건강식품 신청 허가 규정」개정 초안을 발표하고 60일간 의견을 수렴함
- 주요 내용(개정안 주요 변경 내용)

1) 등록 심사의 효율화(관련 조항: 제 2조 ~ 제5조, 제13조 ~ 제25조, 제28조, 제31조 및 제32조)

① 제 2조: 등록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추가함

② 제 13조: 제품의 원료 성분 규격 및 함량 심사 시 필요한 서류를 수정함

③ 제 23조의 수정 내용

- 서로 다른 제조 업체에서 생산된 품목의 경우, 우수 작업 기준 준수를 증명하는 자료를 각 제조 업체별로 제공해야 함
- 동일한 제조 업체의 다른 공장에서 생산된 품목의 경우, 공장 배치도를 추가로 제출해야 함

2) 건강식품 등록 허가증의 유효 기간 및 등록 항목 수정(제 12조)

3)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등록 및 심사 신청 가능(제 33조)

- 건강식품 허가 신청 플랫폼 : https://oap.fda.gov.tw/B101?type=1

4) 위반 시 조치사항:

- 보건복지부에 건강식품으로 검사, 등록, 승인을 신청하지 않은 제품을 건강식품이거나 특정 건강 기능을 가진 것으로 표시, 광고하는 경우:

① 3년 이하의 징역 및 1백만 대만 달러 이하의 벌금 부과

② 판매 상품을 회수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재고 상품을 처리해야 함

출처 :行政院公報資訊網, 預告「健康食品申請許可辦法」修正草案, 2023.10.20

영국, 와인 규제 완화 조치 발표

- 2023년 10월 16일, 영국 환경식품농무부(DEFRA)는 영국 와인 시장의 혁신과 효율성을 추구하고자 기존에 따르던 EU 와인 규제를 완화하는 다양한 조치를 제안함
- 주요 내용

1) 주요 규제 완화 조치(일부 요약)

- 수입 와인 라벨에 수입업자 이름을 표기해야 하는 요구 사항을 폐지함
- 하이브리드 품종으로 생산된 와인에 대해 원산지 지정 보호(Protected Designation of Origin PDO)* 및 지리적 표시 보호(protected geographical indications, PGI)* 부착 옵션 제공

(*) EU와 영국에서 사용되며, 특정 지역의 재료 및 생산자의 인정된 노하우로 만들어진 제품이 부착 가능한 라벨

- 피케트(Piquette, 와인 찌꺼기로 제조한 저렴한 주류)의 제조와 판매를 허용함
- 수입 와인의 블렌딩(와인 품종 혼합)이 제한 없이 합법화
- 포장 및 병 모양에 대한 규제를 폐지하여 자유로운 병 모양 도입 가능

2) 시행 일정: 제안된 조치는 세 단계에 걸쳐 시행될 예정임

① 2024년 1월 1일: 8개 조치 사항 발효 예정

② 2024년 7월 15일: 2개 조치 사항 발효 예정

③ 2024년 중: 미완성 세부 조치를 포함하여 의회에 통합 와인 개혁 규정 제출 예정

3) 적용 범위: 하이브리드 품종과 관련된 조치 영국 전역, 이외의 모든 조치는 잉글랜드에만 적용됨

TBT

이슈 바로가기

출처 :Department of Environment Food & Rural Affairs, Consultation on smarter regulation: wine reforms Summary and Government response, 2023.10.13

미국, 강화된 규제 조치를 반영한 「유아용 조제분유 제품의 규정 준수 프로그램」 업데이트 공고

SPS

이슈 바로가기

- 2023년 10월, 미국 식품의약품청(FDA)은 크로노박터균* 예방과 관련된 최신 검토 자료를 반영하여 유아용 조제분유 제품의 검사, 샘플링, 실험실 분석 및 수입 유아용 조제분유 제품 관련 항목을 일부 업데이트 한「유아용 조제분유 제품의 규정 준수 프로그램」을 공고함

* 크로노박터균: 장내 세균의 일종으로 분유에서도 생존하며 영유아에게 치명적인 수막염, 폐혈증, 장염을 유발함

- 주요 내용(수입 유아용 조제분유 제품 관련 내용)

1) 수입 유아용 조제분유 제품에서 조사 샘플(surveillance sample)을 추출하는 경우 제시

2) 수입 유아용 조제분유 제품이 구금(detention)될 수 있는 경우:

- 샘플이 공중 보건에 중요한 미생물(주로 살모넬라균, 크로노박터균 등) 중 하나 이상의 양성 반응을 보이는 경우
- 샘플이 영양소 함량 요구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 제품 라벨이 주요 라벨링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출처 :FDA, Compliance Program 7321.006: Infant Formula Program - Inspection, Sample Collection and Examination

2023년 11월 2주차 Vol.109

글로벌 식품 비관세장벽 뉴스레터

WEEKLY NEWSLETTER

글로벌 주간 뉴스브리핑

미국 캘리포니아주, 영유아식 제품의 제조업체에 중금속 검사 및 검사 결과 공개 요건 적용(2024년 1월 1일 시행)

SPS

이슈 바로가기

- 2023년 10월 캘리포니아주 주지사가 법안《Assembly Bill 899(A.B.899)》를 최종 승인함에 따라, 캘리포니아주 내에서 생산, 판매 또는 유통되는 영유아식(baby food)의 제조업체는 자체적으로 제품 내 중금속(비소, 카드뮴, 납, 수은) 수준을 검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함
- 주요 내용

1) 대상 품목: 2세 미만의 유아 및 어린이용이라고 구체적으로 표현된 식품으로, 병, 파우치, 튜브 또는 상자에 포장된 영유아식 제품(유아용 조제분유 제외)

2) 제조업체 대상 독성 물질 검사 요건(시행일: 2024년 1월 1일)

① 영유아식 제조업체는 무작위 추출 등의 방식으로 최종 제품의 생산 단위 기준 대표 샘플을 추출하여, 해당 법률이 인정하는 실험실에서 독성 물질(중금속)을 검사해야 함

② 독성 물질 검사는 판매 또는 유통을 목적으로 최종 제품을 개별 포장하기 이전에 시행되어야 함

③ 월 1회 이상 시행되어야 함

④ 제조업체는 요청이 있을 경우 캘리포니아주 공중 보건부의 공인 대리인에게 검사 결과를 반드시 제공해야 함

3) 제조업체의 독성 물질 검사 결과 공개 요건 (시행일: 2025년 1월 1일)

① 캘리포니아주 내에서 판매, 제조, 배송, 보관 또는 납품되는 최종 영유아식 제품은 해당 법안에 규정된 제품 정보를 모두 소비자에게 공개해야 함

② 제품 유효기간 1개월 후를 기준으로, 각 생산 단위 내 존재하는 독성 물질의 이름과 검출 수준을 제조업체의 웹사이트에 공개해야 함

③ 웹사이트에 공개되는 제품 정보에는 소비자가 식별할 수 있도록 해당 제품의 제품명, 제품 번호(UPC), 크기, 로트 번호 또는 배치 번호 등을 포함한 정보를 제공해야 함

④ 최종 제품의 특정 독성 물질(중금속)을 FDA 규정에 따라 검사하는 경우, 제품 라벨에 표기해야 하는 사항

- 제조업체의 웹사이트로 연결되는 QR코드 또는 기타 기계 판독이 가능한 코드
- "이 제품의 독성 물질 검사에 대한 정보를 보려면 QR 코드를 스캔하십시오." 라는 문구

4) 위반 시 조치사항: 캘리포니아주 내 제품의 판매, 제조, 유통, 보관 및 납품을 금지함

출처 :California Legislative Information, Assembly Bill No. 899, 2023.10.12

유럽연합 환경위원회, 포장 및 포장재 폐기물 규정 채택

기타(환경)

이슈 바로가기

- 2023년 10월 24일, 유럽의회의 환경위원회(ENVI)는 포장재의 재사용 및 재활용을 촉진하며 불필요한 포장재와 포장재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2022년 제안된「포장 및 포장재 폐기물 규정」에 대한 입장문을 최종 채택함
- 주요 내용

1) 제조업체, 포장 공급업체 등 생산자에 대한 책임과 규제를 확대

2) 주요 제안 사항

- 모든 포장재는 재활용이 가능해야 하며, 재활용 가능한 포장재는 2030년 1월 1일부터 특정 재활용 기준에 따라 설계되어야 하며, 2035년 1월 1일부터는 대규모로 재활용되어야 함
-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포장 공간	과대 포장 방지를 위해 전체 부피의 40%이상 빈 공간이 있는 포장 방식이 금지됨
판매 금지	15 마이크론(microns, 0.0001cm) 미만의 가볍고 얇은 비닐봉지 판매 금지 (위생상의 이유로 필요하거나 음식물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기본 포장재로 제공되는 경우 제외)
특정 포장 형식에 대한 제한 사항	사용자가 두 개 이상의 부분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거나 이를 장려하기 위해 고안된 캔, 통, 냄비, 패킷 등으로 판매되는 상품의 포장 등 여러 유형의 일회용 포장을 금지함
플라스틱 포장에서 재활용 원료 사용	1) 새 플라스틱 포장재 제조 시 재활용 플라스틱 원재료 사용을 의무화 2) 포장재에 따른 재활용 최소 비율 규정
재사용 및 재충진	재사용 가능한 포장을 사용하는 사업자는 특정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하나 이상의 재사용 시스템에 참여하여야 하며, 특정 품목의 포장에서 일정 비중을 재사용 및 리필이 가능한 포장으로 대체 필요
환경 라벨링	포장 재사용 관련 가능성에 대한 라벨 및 재사용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QR 코드 또는 기타 디지털 매체를 통해 1회용 포장이 아니라는 점과 수거 장소에 대한 정보 확인이 가능하도록 해야 함
식품 포장의 화학물질	식품 접촉 포장에 의도적으로 첨가된 과불화화합물(PFAS)과 비스페놀 A 사용이 금지됨

3) 시행 일정: 2023년 11월 20일 유럽 의회 본 회의에서 투표 예정

출처 :Committee on the Environment, Public Health and Food Safety, Compromise amendments, 2023.10.18

2023년 11월 2주차 Vol.109

글로벌 식품 비관세장벽 뉴스레터

WEEKLY NEWSLETTER

글로벌 주간 뉴스브리핑

유럽연합, 식품 수출 시 주의해야 하는 식품 표시 기준 종합 공고

TBT

이슈 바로가기

- 본 기사에서는 유럽연합 국가로 식품 수출 시 주의해야 하는 식품 표시 기준을 종합하여 공고함
- 주요 내용

1) 식품 라벨에 표시해야 하는 필수 표기 정보

① 식품명
② 성분 목록(첨가물 포함)
③ 알레르기 정보
④ 특정 성분의 함량
⑤ 날짜 표시(유효기한/사용기한)
⑥ 원산지(정보 명확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 포장에 국가 국기 또는 유명 랜드마크가 표시되는 제품)
⑦ 유럽연합 내 설립된 식품 영업자 또는 수입자의 이름 및 주소
⑧ 순 수량
⑨ 특별한 보관 조건 및/또는 사용 조건
⑩ 사용 지침 (필요한 경우)
⑪ 음료의 알코올 도수
(1.2%보다 높은 경우)
⑫ 영양성분 정보

2) 식품 라벨 표기 시 주의해야 하는 주요 항목

구분	주의 사항
성분 및 첨가제 목록	• 성분 목록은 '성분(Ingredients)' 단어를 명시하여 구성하거나 이를 포함하는 적절한 제목을 명시하여 표기해야 함 • 함량에 따라 내림차순으로 표기하며, 식품에 사용된 모든 성분을 표기해야 함 • 성분명은 《(EU) No 1169/2011》의 제17조와 부록 VI에 규정된 명칭을 사용해야 함
특정 성분의 함량	• 성분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해당 성분의 함량을 식품 라벨에 반드시 표시해야 함 - 식품명에 표시되거나 일반적으로 식품명과 연관되는 경우 - 라벨에 해당 성분이 단어, 그림 또는 그래픽의 형태로 강조된 경우 - 식품의 특성을 나타내며, 이름 또는 형태로 인해 혼동될 수 있는 다른 제품과 구별하는 데 필요한 경우
식품 알레르기 정보	• 성분 목록(ingredients list)에서 모든 식품 알레르기 유발 물질은 글꼴이나 문자 크기, 배경 색상에 차이를 두어 강조하여 표기해야 함 • 성분 목록이 없는 경우, '함유(contains)' 단어를 사용하여 해당 물질의 명칭을 표기함
영양성분 정보	• 사전 포장된 식품에는 소비자에게 에너지와 영양소의 함량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영양성분 라벨(nutrition declaration)이 부착되어야 함 • 영양성분 라벨은 식품의 포장 또는 라벨에 직접 표시되어야하며, 에너지 값(energy value), 지방, 포화지방, 탄수화물, 설탕, 단백질 및 소금의 함량을 반드시 표시해야 함

출처 :EUROPA, Food labelling rules(최종 업데이트 : 2023.08)

중국, 식품 수출 시 주의해야 하는 식품 표시 기준 종합 공고

TBT

이슈 바로가기

- 본 기사에서는 중국으로 식품을 수출 시 주의해야 하는 주요 식품 표시 기준을 종합하여 공고함
- 주요 내용

1) 식품 라벨에 표시해야 하는 필수 표기 정보(《GB 7718-2011》 규정 기준)

① 식품명
② 원료(성분) 배합표
(원료 함량 비율에 따라 내림차순으로 표시 필요)
③ 중량 및 규격
④ 생산자, 현지 중개 판매자 또는 수입 유통업자의 명칭/주소/연락처(수입 식품 필수 표기 사항 아님)
⑤ 원산지(국가명 또는 지역명)(수입 식품 필수 표기)
⑥ 생산일자 및 품질 보증기간
⑦ 보관 조건
⑧ 식품 생산허가증 보유
⑨ 제품 표준 코드(수입 식품은 제외)
⑩ 기타 표시 사항

2) 식품 라벨에 표시를 권장하는 기타 표기 사항(《GB 7718-2011》 규정 기준)

- 로트 번호, 섭취 방법, 알레르기 유발 물질

(* 로트번호: 동일한 생산조건 하에서 생산되어 균일한 특성 및 품질을 갖는 제품군)

3) 수입 식품에 별도 규정된 품목별 식품 라벨 표기 기준(《관리방법》 규정 기준)

품목	표시 기준
수입 냉장·냉동 육류 제품	• 내·외포장의 눈에 띄는 곳에 중문 혹은 영문, 수출국 언어로 원산지, 상품명, 생산일자, 생산업체 등록번호, 제조날짜 표기 필요 • 외포장에는 중문으로 규격, 원산지(주/성/시까지 구체적 명시), 목적지(중국), 생산일자, 보관 온도 등 내용 표기 필요 • 목적지는 '중국'으로 표기하고, 수출국의 공식 검역·검사 라벨 부착 필요
수입 수산물	• 내·외포장의 눈에 띄는 곳에 중문 혹은 영문, 수출국 언어로 다음의 항목을 표기 필요 : 상품명과 학명, 규격, 제조날짜, 로트 번호, 유통기한, 보관 조건, 생산방식(해수조업, 담수조업, 양식), 생산지역(해수조업지역, 담수조업 국가 또는 지역, 양식제품 소재 국가 또는 지역), 관련 모든 생산가공업체(어획선, 가공선, 운송선, 독립 냉동창고 포함) 명칭 및 등록번호, 주소 • 목적지(중국) 표기 필요
수입 건강식품·특수 식품	• 중문 라벨은 최소판매포장 위에 인쇄되어야 하며, 따로 중문 라벨을 인쇄해서 부착하면 안 됨

출처 :CHINA BRIEFING, How to Stay Compliant with China's Labeling Requirements for Imported Food, 2023.09.15